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5.03.31.(월)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 Home)

■ 특별공급 청약자격 안내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⑤ "입주자모집공고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자모집공고 <표4>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 ㉠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우선공급(7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td></tr><tr><td>2단계</td><td>일반공급(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td></tr><tr><td>3단계</td><td>추첨공급(10%)</td><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td></tr></tbody></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thead><tr><th colspan="2">공급유형</th><th>기준</th><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thead><tbody><tr><td rowspan="6">생애 최초</td><td rowspan="2">우선공급 (70%)</td><td>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td>100% 이하</td><td>7,205,312</td><td>8,578,088</td><td>9,031,048</td><td>9,733,086</td><td>10,435,124</td><td>11,137,162</td></tr><tr><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20% 이하</td><td>8,646,374</td><td>10,293,706</td><td>10,837,258</td><td>11,679,703</td><td>12,522,149</td><td>13,364,594</td></tr><tr><td rowspan="2">일반공급 (20%)</td><td>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td>130% 이하</td><td>9,366,906</td><td>11,151,514</td><td>11,740,362</td><td>12,653,012</td><td>13,565,661</td><td>14,478,311</td></tr><tr><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40% 이하</td><td>10,087,437</td><td>12,009,323</td><td>12,643,467</td><td>13,626,320</td><td>14,609,174</td><td>15,592,027</td></tr><tr><td rowspan="2">추첨공급 (10%)</td><td rowspan="2">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200% 이하</td><td>14,410,624</td><td>17,156,176</td><td>18,062,096</td><td>19,466,172</td><td>20,870,248</td><td>22,274,324</td></tr></tbody></table>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2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2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보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자산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물, 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사.군.구청장)												
건물,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구분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유의사항
1인 가구	청약 불가	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

· 자녀기준

단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익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